

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

- 환경부 제공 -

환경부는 재활용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. 지난 1월 19일에는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,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하기 위해(안 제1조 2항) ‘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’을 일부 개정한다고 발표했다. 다음에 상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.

- 편집자 주 -

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

[시행 2022. 1. 19.] [환경부고시 제2022-20호, 2022. 1. 19., 일부개정.]

제1조(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)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 6 제12호에 따른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.

1.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
2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공동운영위원회가 재활용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. 다만 이 경우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해야 한다.

제2조(재검토기한) 환경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제3조(규제의 재검토) 환경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
부 칙 < 제2022-20호, 2022. 1. 19. 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